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 광 희 의원외 5인

○ 제안일자 : 2003년 5월 12일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 검토내용 :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차기 년도의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으로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폭주하여 내실 있는 감사 및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행 조례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경에 7일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다음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등 부의안건의 폭주로 실효성 있는 감사와 심도 있는 안전심사가 어려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7월 5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것이 의정업무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